

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지원

주관부서 주택과	과장 (☎ 2986)	주택2팀장 (☎ 5011)	담당자 (☎ 5013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

사업성격		완료시기		사업주체			소요예산(백만원)					
신규	계속	임기내	임기후	국가	시	자체	계	국	시	구	기타	
○		○			○							
이행단계										추진율		
완료	이행후 계속추진	정상추진	일부추진	보류	폐기	기타						
		○										20%

<b>사업목표</b>	○ 기존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화된 역세권, 준공업지역, 저층 주거지 지역 등을 공공주도로 지구 지정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과 함께 도시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									
<b>사업개요</b>	<p>○ 주요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"> <tr> <th colspan="2">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공공주택 특별법)</th> <th>입지 유형별 복합 / 특화 개발사업 신설 * (구조) 매도청구 방식 + 공공단독, 민간참여(신탁, 리스 등)</th> </tr> <tr> <td>1</td> <td>도심, 부도심, 생활권 중심지역,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)</td> <td><b>성장거점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</td> </tr> <tr> <td>2</td> <td>역세권 경계 500m 이내, 노후건축물 40% 이상 준공업지역)</td> <td><b>주거중심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</td> </tr> </table> <p>○ 사업 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토지주 10% 이상 동의 및 지자체의 제안으로 LH가 지구 지정신청</li> <li>- 토지주 2/3 이상 동의 및 국토부(지자체) 지구 지정 이후 사업 시행</li> </ul>	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공공주택 특별법)		입지 유형별 복합 / 특화 개발사업 신설 * (구조) 매도청구 방식 + 공공단독, 민간참여(신탁, 리스 등)	1	도심, 부도심, 생활권 중심지역,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)	<b>성장거점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	2	역세권 경계 500m 이내, 노후건축물 40% 이상 준공업지역)	<b>주거중심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
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(공공주택 특별법)		입지 유형별 복합 / 특화 개발사업 신설 * (구조) 매도청구 방식 + 공공단독, 민간참여(신탁, 리스 등)								
1	도심, 부도심, 생활권 중심지역, 대중교통 결절지 500m 이내)	<b>성장거점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								
2	역세권 경계 500m 이내, 노후건축물 40% 이상 준공업지역)	<b>주거중심형지구 지정</b> * (지원) 건폐율, 용적률 상한선까지 확대 가능 등								
<b>추진계획</b>	<p>○ 주민 홍보 및 LH 컨설팅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등으로 관내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적극 발굴 및 제안</p> <p>○ 후보지 발굴 및 제안, 토지주 동의, 지구 지정 및 인허가 등 각각의 사업단계(연도별 추진계획)에 따른 맞춤형 지원(관계기관 협의, 자문 등)</p>									
<b>타기관 (중앙부처 등) 협조 사항</b>	<p>○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: 사업 후보지 발굴을 위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제안 적극 요청 등</p> <p>○ 인천광역시(주택정책과 등) : 후보지 제안서 검토, 선정 후 지구 지정 및 인허가 등의 절차 신속 추진 요청</p> <p>○ 국토교통부(도심주택총괄과 등) : 후보지 평가위원회 자문 및 선정 요청</p>									

